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7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재난 대비 동물보호 계획 수립 및 지자체 동물 구조책임 확대 ...	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난 대비 동물보호 계획 수립 및 지자체 동물 구조책임 확대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난으로 인해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 ---- <u>사항(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u> <u>다)</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

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구조·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 보호시설 운영, 질병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¹⁾, 지자체장에게는 유실·유기

1)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물 등에 대한 구조·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동물의 소유자등³⁾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⁴⁾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동물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의 수립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장의 보호조치 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소유자의 노력 의무는 강제성이 없고, 지자체장의 구조·보호 의무와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임.

아울러 「재해구호법」⁵⁾은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2)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행 재난관리 법령 전반에서도 동물 구조·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이 부재함. 이로 인해 평상시에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계획과 일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지자체의 현장 조치가 연계되지 못하여 동물보호가 재난대응 체계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다수의 반려동물과 가축이 대피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등, 인명 중심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동물 구조·보호가 사실상 방기된 사례가 발생하였음.⁶⁾

이에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항목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사전 계획 수립과 정책 기반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재난으로 인해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부터 지자체의 현장 실행까지 연계되는 책임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 속에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는데,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반려동물 대피 및

6) “영남 대형 산불로 동물 5만 마리 사상…동물구호체계는 없었다”, 한국일보, 2025.06.26.

수송법(PETS Act)」을 제정해, 재난계획에 반려동물 대피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재난구호기금 지원을 제한하였고,⁷⁾ 일본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동행피난’ 원칙과 지자체의 대피소 관리지침 수립,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였음.⁸⁾

한편,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현행법상 ‘사람’으로 한정된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동반하는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884호)이 계류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동물 구조 이후의 보호·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률에 동물의 피난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25

7) Animal Legal Defense Fund, The PETS Act: Companion Animals Affected by Natural Disasters (최종 검색일: 2025.6.12); PUBLIC LAW 109 - 308 - OCT. 6, 2006.

8)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제2379호, 2025.6.24, 6-7쪽